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1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 11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9. 12. 1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 제안설명자 : 윤재한 지적과장 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(2009.4.2)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세부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시 “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”을 “법에 따른 도로명”으로 변경(안 제11조)
  -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「도로명 주소법」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에 적용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.
-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에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(안 제19조)

- 도로명주소안내판 :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 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
- 도로명주소안내도 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
-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(안 제8조 및 제8조의2)
  - 1)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
    -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: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    -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: 구 수입증지로 함.
  - 2)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을 증지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함
- 기존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이 “삭제” 되는 사항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, 제19조, 제26조)
  - 도로명변경, 도로명시설 설치 등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이관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(안 전반)

#### 다. 근거법령

- 「도로명주소법」 - 2009. 4. 1 개정, 법률 제9569호
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- 2009. 7. 30 개정, 대통령령 제21656호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( 이국환 전문위원 )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 주소법」으로 개정('09.4.2)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으로 조례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」에

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 하였으며,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으로 “도로명 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“서울특별시마포구새주소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“새주소 안내시설”을 “도로명 안내시설”로 변경 하였고,

-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결정 및 징수 방법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였으며, 기존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삭제 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, 제19조, 제26조) 하였으며,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법령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